

# 2019년도 제2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2. 2.(월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최승수,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19-26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011건(안전번호 제2019-157083호~157865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19-157083호는 민원인이 자신의 직원이었던 자가 작성한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건임. 해당 이미지의 저작물성 및 불법복제물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점, 사인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이는 점,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확산의 방지라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19-157084호~157087호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에서 추출한 자막파일(smi 파일)을 자막공유 사이트에서 제공한 사안임. 복제·전송자가 우리말 번역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안전번호 제2019-157088호~157092호는 비공개 밴드에서 소셜 텍스트 파일을 제공한 사안임. 복제·전송자가 여러 건의 어문저작물을 제공하고 있고,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안전번호 제2019-157853호~157855호는 보호원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하여 심의 요청된 건으로 부결함. 안전번호 제2019-157856호~157865호는 소셜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밴드에서 소셜을 제공한 사안임. 불법복제물의 제공

을 요청하는 부분(본문)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 평가할 수 있고, 소설(파일)을 실제로 전송한 부분(댓글)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에 해당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안건번호 제2019-157720호는 보호원이 제출한 안건의 저작물명과 보호원이 조사한 자료의 저작물이 불일치함. 보호원의 안건 조사가 잘못 되었으므로 각하 취지로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98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75회 저작권보호 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19-26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6쪽에 밴드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해당 정보는 비식별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이의 없음.
- C 위원 : 밴드명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 D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밴드명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 3. 안전상정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19-157083호~157865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011건임.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708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민원인의 직원이었던 자가 2015. 1. 5. 민원인의 제품 판매, 홍보를 위해 업로드한 블로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한 사안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5708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민원인의 저작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 C 위원 : ‘○○○○○○’가 ‘目目’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이곳에 근무했던 직원의 개인 블로그를 회사 홍보용 블로그로 이용한 것으로 보임. 직원이 퇴사한 후 개인 블로그에 작성했던 회사 홍보용 게시글을 지우지 않고,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홍보를 위해 블로그를 계속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민원인은 자신의 사업체에서 사용하던 이미지를 삭제해달라고 신고한 것으로 이해됨.  
해당 블로그에서 신고 된 게시물 외에 최근 게시물에도 동일한 이미지가 들어가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블로그의 최근 게시물인 2019. 11. 29.자 게시물을 보면 '☹☹ 공식 대리점'이라 기재되어 있을 뿐 '○○○○○○○○' 이미지는 확인되지 않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물성 인정 여부를 떠나서 사인 간 분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임.
- A 위원 : 같은 생각임.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등은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D 위원 : 해당 안전은 시정권고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동의함.
- C 위원 : 본 건 이미지의 합법 저작물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7083호는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7084호~157087호는 권리자인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보호원이 영화 자막공유사이트를 조사한 사안임. 자막공유사이트 이용자가 SMI 파일을 무단으로 전송하였음. SMI 파일은 특정 영상물과

결합하여 자막이 자동으로 싱크됨.

해당 사이트의 게시자가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영리 목적은 없지만 해당 사이트에 광고가 여러 건 게재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자막파일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에서 추출한 영어 또는 우리말 자막파일로, 자막 파일 제작자가 우리말 번역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아니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57084호~15708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번역한 것을 데드카피한 것이어서 이건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임.
- B 위원 : 동의함. 자막의 불법복제이므로 이견 없이 가결하자는 의견임.
- D 위원 :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함.
- C 위원 : 번역된 자막을 무단 추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57084호~15708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

호 제2019-157088호~157092호 및 제2019-157856호~157865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밴드에서 어문저작물을 텍스트 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19-157088호~157092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밴드의 회원 수는 2019. 11. 25. 기준 7,511명이고, 밴드 소개에는 “소설을 공유하는 밴드입니다.”, “밴드와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해당 밴드는 원래 공개 밴드였으나 최근 초대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밴드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됨. 정확한 변경 시기는 확인이 어려움.

(안건번호 제2019-157856호~157865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제공을 요청하는 부분(본문)과 불법복제물을 실제로 전송한 부분(댓글)으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밴드의 회원 수는 약 5,543명임. 밴드 소개에는 “이 밴드는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지만, 게시물은 멤버만 볼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57088호~157092호 및 제2019-157856호~15786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해당 안건의 경우 이전에 게시물이 검색되는 밴드였다가 비공개로 변경된 밴드이고,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불법복제물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다만, 원칙적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없는 밴드나 카페 등 SNS를 보호원에서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안건은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온라인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팀에 밴드 검색창에서 검색되지 않는 게시물은 심의요청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수 차례 전달한 바 있음.
- D 위원 : 해당 밴드는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밴드명과 밴드소개를 보면 불법복제물 공유를 위해 개설하였을 가능성이 큼.
- B 위원 : 불법복제물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밴드라 하더라도 비공개 밴드라면 보호원에서 모니터링을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비공개 밴드 내 불법복제물을 모니터링 하는 것과 관련하여 헌법, 행정법 전공 교수님들을 모시고 시정권고 제도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음. 보호원은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하는 관계에 있고, 공공기관이 영장 없이 비공개 밴드를 조사한 결과가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초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밴드는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B 위원 : 연구 결과는 공유해주시기 바람.  
밴드명만 보더라도 불법복제물 공유를 위한 것이 분명하다면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어야하지만, 밴드명 등에서 불법복제물 공유 목적을 찾기 어렵다면 보호원이 모니터링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7088호~157092

호 및 제2019-157856호~15786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7853호~157855호는 안전번호 제2019-157850호~157852호와 중복하여 심의 요청된 사안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57853호~15785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안전이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특별한 이견이 없음.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7853호~157855호는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7093호~157852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음악 '진정인가요 (가수: 송가인, 김소유)'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19-157093호의 음원파일은 2019. 4. 26. 발매된 곡으로 앨범 '미스트롯 LEGEND MISSION II'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곡의 원곡은 2000. 1. 1. 발매된 앨범 '김연자 골든 히트송'에 수록된 '진정 인가요 (가수: 김연자)'임.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앨범 '미스트롯 LEGEND MISSION II'에 수록된 약 9곡의 음원을 이용할 수 있음.

(영화 '람보 : 라스트 워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19-157276호는 2019. 10. 23. 개봉한 최신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방송 '쌈니다 천리마마트(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57377호는 총 12부작 드라마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tvN 채널에서 2019. 9. 20.부터 현재까지 금요일 오후 11시에 방영 중인 최신 저작물임. 해당 드라마는 웹툰이 원작임.

(방송 '시베리아 선발대(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19-157428호는 총 9부작 예능을 모바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tvN 채널에서 2019. 9. 26.부터 2019. 11. 21.까지 목요일 오후 11시에 방영했던 방송물임.

(방송 '스폭스(2002)'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19-157720호의 저작물명에 기재되어 있는 '스폭스'는 영국 드라마임. '스폭스'는 영국 BBC 채널에서 2002. 5. 13.부터 2002. 6. 17.까지 방영했던 저작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점 저작물'로 분류되어 있음. 보호원 내규인 '온라인 불법복제물등 업무 처리 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중점 보호 저작물'은 "긴급 대응 저작물을 제외하고 시급한 조치 등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호원이 인정하는 저작물"에 해당함. 제한된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점 보호 저작물'을 선정하고 있으며, 재택 모니터링 요원이 이 목록을 참고

하여 불법복제물을 조사하게 됨. [별표 2]를 보면, '방송' 분야는 닐슨코리아 시청률 주간순위 기준으로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 채널 시청률 각 1~20위, 현재 방송 중이거나 방송 1개월 이내의 애니메이션 및 해외드라마를 중점 보호 저작물로 선정하고 있음. 그밖에 '기타' 선정 기준에 따라 보호원이 중점 보호 저작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점 보호 저작물로 선정하고 있음.

- B 위원 : 그런데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는 '스폭스(2002)'가 아닌 다른 드라마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등록된 저작물명과 채증 자료의 저작물이 일치하지 않음. 불법복제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대로 시정권고를 하게 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는 심의 전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는 '셜드 : XX 강력반 시즌5'임.
- D 위원 : 방송 '셜드 : XX 강력반 시즌5'는 몇 년도 작품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영상물은 미국 FX 채널에서 2006. 1. 10.부터 2006. 3. 21.까지 방영된 총 11부작 드라마임.
- D 위원 : 권리자가 신고하거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는데도 보호원이 10년도 더 된 미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 B 위원 :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있는 자료 우측 하단의 날짜는 보호원의 채증 일자로 알고 있는데, 심의까지 상당히 지체된 것으로 보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회의록 13면부터 14면 9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출판 '전국수석 무림가다 (출판:고렘팩토리,카카오 페이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7841호는 밴드에서 여러 어문저작물을 압축 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어문저작물은 2019. 1. 25. 출간되었으며, 총 322권으로 완결되었음. 합법 저작물은 eBook 구매 시 26화부터 약 100원에 구매할 수 있음. 참고로 해당 밴드의 회원 수는 약 508명임. 누구나 해당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게시물을 볼 수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57093호~15785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57720호는 의안으로 성립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채증 자료이므로 각하를 하는 것이 마땅함. 의결주문은 가결 또는 부결로만 할 수 있으므로 각하 취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57720호는 부결,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나머

지 데드카피 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7720호 안전은 저작물명과 채증된 자료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각하 취지로 부결함. 시정권고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C 위원 : 부결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7720호는 부결, 안전번호 제2019-157093호~157719호 및 제2019-157721호~157852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7083호, 제2019-157720호, 제157853호~157855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157084호~157092호, 제2019-157856호~15786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3. 폐회 선언

-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2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9.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오영주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